

교육부 시설부분 감사사례 분석



강사: 서원대학교 시설안전팀장 김선수

전국대학교시설관리자협의회 2019년 세미나

감사사례 분석 내용



- 자 료 교육부 감사결과
- 감사사항 종합감사 및 회계부분감사 내용
- 기 간 2016년~2019년
- 감사내용 시설관련 내용 발취
- 분석내용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의 흐름과 처분내용

감사내용



지적건명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 0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하여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합계 000천원 상당의 공사비 과다지출



처 분

- 주의(0명)
- 시정(회수)
- 부적정 시공 0건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액 합계 000천원을 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비 고

- **종합감사에서만 지적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직 감사가 투입되는 종합감사에서만 지적됨)

>>> 주요 지적 사례 : 천정공사 인건비 중복, 철거 고자재 미 감액, 우레탄방수 두께, 각종 공사 내역 2중 적용(주로 인건비 2중 적용) 등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6항

감사내용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 시행령 제55조(검사)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감사내용



지적건명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 정산



지적내용

• 00학사 화장실 변경공사비에 계상된 법정 보험료 및 환경관리비 합계 000천원에 대하여 업체가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미 정산



처 분

• 경고 (0명)
• 시정 (회수)
• 정산하지 아니하고 00건설에 지급한 법정경비 합계 000천원을 정산하기 바람



비 고

• 종합감사 및 회계부분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임

>>>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건설산업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감사내용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7.>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8.>

>>> 정산사항: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 주의사항: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보험료는 당해 현장 사용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회사 직원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확인서에 현장명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 좋음. 또한 극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현장 확인서를 공사명만 바꾸어 칼라스캔으로 위조하여 제출한 사항도 있음(사문서위조로 고발조치 하였음)

감사내용



지적건명

일반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체결



지적내용

- 2015.6.~ 2017.8. 까지
- 일반경쟁입찰대상 00건
(000,000천원) 수의계약체결



처 분

- 경징계 (0명)
- 경 고 (0명)



비 고

- 종합감사 및 회계부분감사에서 많이 지적되는 사항임

>>>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전문개정 1999. 1. 29.]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감사내용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구조 품질 등으로 경쟁 할 수 없는 경우
- 건설기본산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로써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다른 공사관련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감사내용



지적건명 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부당

지적내용	처 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증축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 • 2018.2.6.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여 000 종합건설(주)에 선금으로 0억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 (0명) • 경 고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건수가 많지않으나, 처벌수위가 높음

>>>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 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감사내용



지적건명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지적내용

•전문공사 0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지않은 업체들과 계약체결



처 분

•경고 (0명) •주의 (0명)
(별도조치)
•전문건설업 등록없이 공사를 시행한 (주)000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 위반으로 같은 법 96조1호에 따라 고발조치



비 고

•법령위반사항 고발조치사례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8조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감사내용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사내용



지적건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미 분리발주

지적내용	처 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건의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0명) • 주의 (0명) (별도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1항 및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5조1항에 따라 고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위반사항 고발조치사례

>>> 관련법령: 전기공사업법 제11조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1항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1. 7.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3. 25.]

감사내용



지적건명 가설 건축물 건축 및 사용 부적정

지적내용	처분	비고
•가설 건축물을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 없이 건축하고, 사용승인 없이 사용	•기관주의	-

>>> 주의사항: 최근 총주 찜질방 및 각종 화재 이후 소방서가 건축전문가를 채용하여 특별점검하고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관할청에 고발조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관련법령: 건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감사내용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 제1항 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시행령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감사내용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제12조·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6. 5. 12., 2007. 12. 13.,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②영 제22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 5. 12., 2007. 12. 13.,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1.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감사내용



지적건명 건설폐기물 배출정보 입력 부적정

지적내용	처분	비고
•폐기물처리 용역 00건을 처리하면서 배출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용업업체에 기관 공인인 증서를 제공하여 대신 입력	•기관경고	-

>>>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 총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 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 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상·하수도관의 파열·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는 별표 2의 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 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감사내용



지적건명

화재감지기 부족설치



지적내용

- 바닥면적 70㎡ 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차동식 소포트형 감지기를 환경개선 공사 후 바닥면적이 70㎡ 초과하는 공간에 1개만 설치



처 분

- 주의(0명)
- 시정(추가시공)
- 관련법령에 따라 감지기를 추가시공하기 바람



비 고

-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사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1항 , 제3항

감사내용



지적건명 개산금 지급부적정

지적내용	처 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총 000,000천 원을 개산금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0명) 	-

>>>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4조 제1호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 가. 사례금
- 나. 부담금, 보조금
-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내용: 개산금이란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설계변경 계약 체결 전에 투입한 공사비로, 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결재 후

시행 가능(단, 개산금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추후 물가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 불가함)

감사내용



지적건명

지체상금 미 징수



지적내용

- 준공예정일을 경과한 공사 0건에 대한 지체상금 미징수



처 분

- 경고(0명)
- 시정(회수)
- 공사 지체상금 000천원을 시공업체로부터 징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기 바람



비 고

-

>>>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공사계약서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내용



지적건명 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지적내용	처분	비고
•강의동 후면에 누수를 동반한 폭 3mm 이상의 균열 등 손상이 다수 발생 하였는데도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미 실시	•경고(0명) •통보 •제2 강의동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바람	-

>>> 관련법령: 건축법 제35조 및 48조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 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 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 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2016. 2. 3.>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감사내용



지적건명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소홀



지적내용

•기숙사 1개동에 관하여 재해취약시설 미지정, 정기점검 미실시, 관리카드 미작성



처 분

•경고(0명)
•주의(0명)
•통보
•재해취약시설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비 고

-

>>> 관련법령: 교육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2018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감사결과 분석에 따른 추이



- ☞ 행정적 지적 사항과 더불어 법적 사항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기관장 또는 실무책임자(팀장)를 고발하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 안전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강화하고 있음



감 사 합 니 다.

